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94
----------	------

제출일자 : 2024. 10. 5
제출자 : 달성군수



1. 개정이유

사문진 폐쇄시설물에 대한 조례 내용 삭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 및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이용객 준수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소형보트 용어 정의 삭제(안 제2조제3호)
- 나. 강정고령보 계류장 명칭 및 위치 삭제(안 제3조)
- 다.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를 구체화하여 명시(안 제6조제2항제2호)
- 라.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구명조끼 착용 사항 적용(안 제10조제1항)
- 마. 사문진 유람선 이용료에서 소형보트 삭제(안 별표 1)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17조
 - (2)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 (2) 입법예고(2024. 10. 4. ~ 10. 24.) 결과 : 의견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 (7)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상이용시설(이하 “수상시설”이라 한다)”이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유선으로서의 유람선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위치) 수상시설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사문진로1길 42-1 일원에 있는 낙동강 사문진 나루터에 둔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 이용료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10. 달성군민
11. 그 밖에 군수가 계절적 요인,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비상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견되는 때 수상시설의 운행·관리자 또는 선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 이용객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함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용료(제4조제1항 관련)

(단위 : 원/1인)

구 분		요금
유람선	소인	10,000
	대인	15,000

※ “소인”이란 36개월부터 초등학생 이하인 자를 말한다.

※ “대인”이란 중학생 이상인 자를 말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2. (생략)</p> <p>3. “소형보트”란 「수상레저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p> <p>4. “유람선”이란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유선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4. “수상이용시설(이하 “수상시설”이라 한다)”이란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유선으로서의 유람선을 말한다.</p>
<p>제3조(명칭 및 위치) 수상이용시설(이하 “수상시설”이라고 한다)이 소재한 곳의 명칭은 <u>낙동강 사문진 나루터 및 강정고령보</u>로 하고, <u>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사문진로1길 42-1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강정고령보 하류 일원</u>에 둔다.</p>	<p>제3조(위치) 수상시설은 <u>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사문진로1길 42-1 일원에 있는 낙동강 사문진 나루터</u>에 둔다.</p>
<p>제6조(이용료 면제 및 감면)</p> <p>② (생략)</p> <p>1. (생략)</p> <p>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p>	<p>제6조(이용료 면제 및 감면)</p> <p>②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p>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0. (생략)

11. (생략)

제10조(이용객 준수사항) ①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항질서의 유지 및 위해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하여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10. (현행과 같음)

11. (현행과 같음)

제10조(이용객 준수사항) ① -----

야 한다.

1. 이용객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함

2. ~ 3. (생략)

[별표 1]

이용료

(단위 : 원)

구 분		요금
유람선	소인	10,000이하
소형보트	대인	15,000이하

-----.

1. 비상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견되는 때 수상시설의 운영·관리자 또는 선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 이용객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함

2. ~ 3. (현행과 같음)

[별표 1]

이용료(제4조제1항 관련)

(단위 : 원/1인)

구 분		요금
유람선	소인	10,000원 이하
	대인	15,000원 이하

※ “소인”이란 36개월부터 초등학생 이하인 자를 말한다.

※ “대인”이란 중학생 이상인 자를 말한다.

관 계 법 령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17조(유선의 인명구조용 장비 등)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유선사업자가 유선 및 유선장에 갖추어야 하는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선에는 승선 정원의 1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구명조끼 중 승선 정원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는 소아용으로 하여야 한다)를 갖추는 것
2. 유선장에 유선(5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제6호에 따른 장비를 갖춘 유선은 제외한다)이 30척 이하인 경우에는 1척 이상, 31척 이상 50척 이하인 경우에는 2척 이상, 51척 이상인 경우에는 50척을 초과하는 50척마다 1척씩 더한 수 이상의 비상구조선을 갖추는 것
3. 승선 정원이 5명 이상이거나 추진기관을 설치한 유선에는 그 승선 정원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救命浮環)을 갖추는 것. 다만, 승선 정원의 50퍼센트 이상(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에는 25퍼센트 이상)을 태울 수 있는 수의 구명정(救命艇), 구명뗏목 또는 구명부기(救命浮器)를 갖춘 경우에는 승선 정원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으로 한다.
4. 승선 정원이 13명 이상인 유선에는 유선마다 지름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줄 1개 이상이나 드로우 백(throw bag) 1개 이상을 갖추는 것
5. 유선장에는 노도(櫓棹)가 있는 유선 수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선박에 필요한 예비 노도를 갖추는 것
6. 2해리 이상을 운항하는 유선에는 유선장 또는 가까운 무선국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추는 것
7.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유선(2해리 미만을 운항하는 유선의 경우에는 추진기관을 설치한 유선 중 야간운항을 하는 유선만 해당한다)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하여 위치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갖추는 것
8. 승선 정원이 13명 이상인 유선에는 유선마다 선실·조타실 및 기관실별로 1개 이상의 소화기를 갖추는 것
9. 유선장에는 유선을 안전하게 매어두는 시설과 승객의 승선·하선에 필요한 1개 이상의 구명부환을 갖춘 승강장 설비를 갖추는 것
10. 유선장에는 승객이 이용하기에 적당한 규모의 대기시설, 매표소, 화장실을 갖추는 것
11. 삭제 <2016. 1. 22.>
12. 잠수를 영업 수단으로 하는 유선의 유선장에는 그 영업에 적당한 규모의 해상선착장과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검사에 합격한 승객 운송선 및 비상구조선을 갖추는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12호의 비상구조선은 승선 정원 4명 이상, 시속 20노트 이상의 성

능을 가진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하며, 영업구역의 순시와 사고발생 시의 인명구조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망원경 1개
2. 자기점화등 1개 이상
3. 구명조끼 4개
4. 구명부환 2개 이상
5. 드로우 백 1개 이상

③ 유선에 갖추어 두어야 하는 인명구조용 장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선박구명설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장비는 관할관청이 해당 영업구역의 수심·수세 및 운항거리 등을 고려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명구조용 장비는 승객, 선원, 인명구조요원, 그 밖의 종사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정의)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